

[√]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[]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| | | |
|------|-----|----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5일 |
|------|-----|---------|

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청인 | 성명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장 |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210-83-02200 |
| |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935 | |

(전화번호 : 02-3146-3343)

| | |
|------------|--|
| 허가연월일 및 번호 | 2019년 5월 8일 서울 제 1554호 |
| 점용(행위) 위치 |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86-1 |
| 점용(행위) 내용 | 상수도관(D600,D200)정비 및 상수도 맨홀 보수 [점용(행위) 면적: 18㎡] |
| 점용(행위) 기간 | 2019년 5월 8일 부터 2019년 6월 17일까지(40 일간) |
| 연장기간 | 2019년 6월 18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(75 일간) |
| 연장사유 | 정비작업 불가(상수도관 지수불가)에 따른 작업 연기 |

「하천법」 제33조제1항,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,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([√]하천점용허가기간 []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)의 연장을 신청합니다.

2019년 6월 17일

신청인 북부수도사업소장 (서명 또는 인)



귀하

국토교통부장관, 지방국토관리청장
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

| | | |
|------|----|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없음 | 수수료 없음 |
|------|----|-----------|

처리절차



신청인 처리기관: 국토교통부, 지방국토관리청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